

1994 년 매스컴관계 판례 회고

- 명예·프라이버시·정보공개 등의 동향을 중심으로(下)-

田島泰彦

이 글은 일본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연구」 1995 년 4 월호에 실린 田島泰彦(新奈川대학 단기대학부 교수)의 「1994 년 매스컴 관계 판례동향- 명예, 프라이버시, 정보공개 등의 동향을 중심으로(하)」를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북조선 스파이의혹」 보도소송판결

재작년에도 「週刊文春」의 기사와 관련, 문예춘추사 등을 제소한 사건의 판결이 있었지만(원고 패소, 동경지방법원 1993 년 2 월 25 일 판결) 작년에는 이른바 「북조선 스파이 의혹」 보도소송을 둘러싼 상당수의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요코스카」에서 스낵을 경영하던 八尾 恵 씨가 언론에 의해 북조선의 스파이인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각 보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의 게재 등을 청구한 소송이다. 원고인 八尾 씨는 본명과 다른 명의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져 1988 년 5 월 新奈川 순경에 의해 유인(有印)사문서 위조·동 행사의 피의사실로 체포된 바 있는데 그 후 동 피의사실과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친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 행사의 피의사실에 의해 구류되어 88 년 6 월 요코하마 간이법원에 후자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 만엔(45 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전자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 원고는 88 년 8 월에는 국익·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무장관으로부터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았었다.

작년에 내려진 것은 다음과 같은 4 개의 사안과 관련한 5 개의 판결이다. ① 共同통신사의 10 건의 배신 기사를 둘러싼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4 월 12 일의 동경지방법원 판결. ②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 심 판결을 지지, 항소를 기각한 10 월 26 일의 동경고등법원판결. ③ 아사히신문의 9 건의 기사를 둘러싼 소송으로, 110 만엔(990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4 월 22 일의 横浜지방법원 판결. ④ 讀賣신문의 13 건의 기사를 둘러싼 소송으로 동일하게 110 만엔의 배상을 명한 같은 날의 横浜지방법원 판결. ⑤ 도쿄신문의 9 건의 기사와 관련, 中日신문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110 만엔의 배상을 명한 5 월 13 일의 동경지방법원 판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은 共同통신사의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그 밖의 신문사의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로 갈라지고 있으나 원고 승소의 판결에 있어서도 모든 기사가 아닌 일부에 관해서만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 명예훼손 외에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에 근거한 배상 청구도 있었으나 ④의 사안에서의 일부 사진의 게재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조치로 사죄광고의 게재와 축쇄판 데이터베이스에의

주의환기, 경고의 부전(付纂) 등의 도서관등에의 송부까지도 청구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에서 흥미있는 문제가 다투어지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판결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약간의 논점을 적출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익명정보와 명예훼손>

문제가 된 다른 매체의 기사가 원칙적으로 원고를 실명으로 보도한데 반해 共同통신의 배신기사는 원고를 익명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이 共同통신의 소송에서는 우선 익명과 명예훼손의 성립여부가 문제로 등장했다. 이 점에 관해 동경지방법원 판결은 ①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보도와 관제되는 사실과 당해 특정인의관계가 명확해야 함을 요하며 익명보도에 의해 그 관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하면서 ② 보도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 자체에서 보도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을 요하며, 가령 다른 보도와 병합해서 고찰하여 보도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바로 당해 보도가 보도대상을 특정하여 보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며 ③ 법원이 사후적인 총합인정으로 익명기사의 익명성을 부정하면 보도기관의 익명기사 작성 의욕을 감쇄시키고 부당한 실명기사 작성을 조장할 수도 있으며 ④ 익명기사는 「독자에 대해 실명으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안임을 시사하고 보도가 흥미 본위로 흐르는 경향을 제한하는 효용이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의 유무를 다른 보도매체의 보도와 병합해서 읽고 결정하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는 한편 ⑤ 「당해 보도매체 이외의 실명보도가 다수로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당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의 실명을 인식한 후」의 익명 보도는 「익명성을 실질적으로는 상실」하나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감쇄요소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본건에서는 최초의 1 건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익명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기사의 진실성과 오신상당성>

본건 각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사의 주요내용은 원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共同통신: ① 북조선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촉, 그 지시하에 정보수집활동을 했다 ② 요도호 공중납치사건의 범인과 관계가 있다. ③ 북조선공작원과 접촉했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여권 반납명령을 받은 일본인 여성 5인 중에서 중심인물이었다는 혐의가 있다. (2) 아사히신문 ① 북조선공작원과 접촉하고 협력했다. ② 자택에서 난수표와 달러화가 발견되어 공작조직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③ 요도호사건의 범인을 지원·협력했으며 이를 위해 은행구좌를 개설했다. (3) 요미우리신문: ① 북조선의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협력했다 ② 한국항공기사건에 관여했다 ③ 복수의 위조여권을 갖고 있었다 ④ 요도호사건의 범인을 지원·협력했으며 이를 위해 은행구좌를 개설, 현금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4) 도쿄신문: ① 북조선공작원과 접촉했으며 그 협력자였거나, 그런 혐의가 있다 ② 정보수집 또는 연락책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③ 위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여권을 갖고

있었다 ④ 요도호 공중납치사건으로 체포되었던 한 사람과 유럽에서 만나고 있었다 ⑤
현경(縣警)은 원고와 ④의 인물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입수했다는 등의 열가지 사실.

각 사안 모두 이들 기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
또한 각 기사가 공공성과 공익 목적성을 갖고 있음을 각각의 판결에서 시원스럽게 인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각 기사의 진실성 또는 그 오신상당성의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다.
우선 기사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각 판결 모두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증거 등도 극명하게
검토하면서 (1)에서는 전부, (2)에서는 ① 이외, (3)에서도 동일하게 ① 이외, (4)에서는 ③,
④, ⑤에 대해 진실이라는 입증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즉 共同통신·동경지방법원판결(및
이를 지지한 동경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원고가 북조선의 공작원과 접촉, 그에게 협력한
사실은 진실로 인정된 반면 그 밖의 나머지 많은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부정되었던
것이다.

다음에,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해서는 각 판결 모두 취재의 상황에 관한 상세한 조사에
근거하면서 (1)에서는公安사건의 특수성에 유래하는公安당국으로부터의 정보의 입증확보의
곤란성, 본건 보도의 신속성의 요청,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에만 근거한
기사작성·배신·원고측에의 취재의 노력이나 익명보도의 유지자세 등도 고려하여 모든
사실에서 주요내용을 진실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한편,
(2)에서는 ②에 관하여 북조선의 공작활동에 깊이 관여했던 사실은公安당국의 견해에
머물면서 입증사실의 확인도 없으며 또 ③에 관하여 현금카드의 비밀번호와 요도호 범인의
생년월일이 일치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은 인정했으나 거기에서 범인을 위한 구좌개설이나
범인에게 지원·협력했었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다며 상당성을 부인하고 (3)에서도 ②,
③에 관해公安당국의 견해에 그쳐 입증을 못했으며 또 ④에 대해서도 앞의 아사히신문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각각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4)에서는 상당성의 기준에 관해
수사당국의 공식발표와 그 정확한 보도는 별도로 하고 수사관의 담화나 예측 등의 취재에
대해서는 그 취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자료·근거에
기초를 두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면서 본건 ③, ④, ⑤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실오신의 상당한 이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실명·경칭을 붙이지 않은 보도와 명예훼손>

다음은 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이 실명으로 경칭을 붙이지 않고 보도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인데 아사히, 요미우리신문에 대한
横浜지방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기사의 내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명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경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경칭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보도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동경신문에
대한 横浜지방법원 판결은 실명보도나 경칭을 붙이지 않은 보도의 허용성 여부는

「보도대상이 된 사안의 성질,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그 특성, 기술의 태도, 보도 당시에
있어서의 사회상황·독자의 의식·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와의 균형을 감안하여 결정해야만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본건에서는 실명

·경청을 붙이지않은 보도는 어쩔 수 없었으며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 원고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한 기사속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고의 주소, 이름, 나이, 직업이나 경력, 경제, 생활상황,인물상 등의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인데 각 판결 모두 프라이버시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요건과 면책기준을 제시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그 면책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격의 자율성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보유헌 이익의 일환으로서 개인에 관한 일정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정보를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으로서(도쿄신문 ·橫浜지방법원 판결) 또는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 또는 「사적사항」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 혹은 「권리」로서 (앞의 판결 이외의 제 판결) 프라이버시가 파악됨과 동시에 판결에 따라서는 그 성립 요건으로서 「宴のあと」 동경지방법원 판결(1964년)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동경신문 · 橫浜지방법원판결, 共同통신 ·동경지방법원 판결).

그리고 모든 판결이 일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고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 면책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의 요건으로서 (1) ① 사항의 공공성 ② 목적의 공익성 ③ 공표내용이 「사회일반의 관심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이 라는 세 기준을 제시하는 것(共同통신 ·동경지방법원판결), (2) 전기 ①, ②와 같으며 여기에 ③ 「사실이 기사의 내용, 배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사항이어야 한다」 고 한 것(아사히, 요미우리신문 ·橫浜지방법원 판결), 그리고(3) ①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인정되어 ② 「표현의 내용방법이 흥미본위로 사실을 왜곡하여 품위를 잃는 서술이 되는 등 부당한 것이 아닐 것 등,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행위」 라고 제시된 것(도쿄신문 ·橫浜지방법원 판결)등 세가지 유형으로 갈렸다. 마지막으로 본건에 대해 그러한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한 결과 모두 전술한 바와 같이 면책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법성이 부정되었다.

<초상권 침해>

마지막으로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소송에서 원고의 얼굴사진이라든가 블라우스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두 또는 그곳으로부터 퇴출하는 사진의 게재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橫浜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진의 촬영·공표는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승낙을 받든가 또는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② 공익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③ 「사진의 촬영, 공표의 방법, 사진의 내용이 앞에 기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상당성이 있을 때」 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본건을 판단한 결과 아사히신문의 사진 및 요미우리신문의 얼굴사진에 대해서는 앞의 면책기준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나 요미우리신문의 출두사진은 기사의 내용·취지로 보아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블라우스로 얼굴을 가린 동일한 사진에 대해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서 판단이 갈라진 것은 전자가 법원의 처분을 보도하는 기사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었으나 후자의 기사는 원고에의 비난보다는 수사에 대한 비판의 논조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그것과의 관계로 사진의 게재는 상당성을 잃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상 법원의 판단에 대해 최소한의 논평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익명보도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해서인데 익명성은 다른 매체의 보도와 병합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해 보도에 한해서 판단해야만 한다는 원칙은 각 매체의 주체성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타 매체에 의한 실명보도가 다수가 되어 많은 국민이 실명을 인식하게 되면 익명성을 잃게 된다고 하는 판결의 기준에 의하면 결국 앞의 원칙자체를 부정하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닐는지, 또한 여기에서는 익명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치 설정이 시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으나 익명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포하는 문제성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라든가 미디어 윤리의 보다 넓은 시야에서 논의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에 기사의 진실성·오신상당성 등에 대해 특히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오신상당성의 판단에 대해 共同통신 동경지방법원 판결이公安사건 취재의 곤란성 등도 근거로 하면서 정중하고 포괄적인 상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되었으며 그 점 다른 판결, 특히 동경신문·横浜지방법원 판결은 상당히 엄격한 입증취재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성질상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외국정보기관으로부터의 정보의존이라는 이런 종류의公安사건재판에 흔히 있기 쉬운 문제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公安사건에 있어서의 정보의 일방성이나 정치성, 검증·입증의 곤란성과 다른 쪽에서의 스파이視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성에 비추어 보면 익명화까지도 포함하여 극히 신중한 취재·보도가 미디어에 요구되고 있다는 등의 여러가지 점이다.

특히 실명·경칭을 붙이지 않은 보도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데 익명·실명은 기본적으로는 미디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윤리에 속하는 문제이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개별적이고 대등한 형량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는 것 등의 점에서 생각할 때 동경신문·横浜지방법원 판결의 법리판단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프라이버시 판단에 관해서는 단순한 법적 이익이 아니고 명확하게 프라이버시를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共同통신·동경지방법원 판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주목되고 있으며 면책의 법리에 대해서는 많은 판결이 사실의 공공성에 더해서 공익 목적성이라든가 사회의 관심의 정당성 혹은 사실과 기사의 관련성 등 표현·보도의 자유면에서 볼 때 과중한 요건을 더하고 있는데 대해서 동경신문·横浜지방법원 판결이 타당한 조정법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초상권에 대해서인데,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의横浜지방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법원에 출두 또는 퇴출하는 장면의 사진에 대해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으로 한쪽에서는 상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한쪽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져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체크하여 같은 모양의 사진게재를 놓고 정반대의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또 설득성을 갖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시된다.

「로스의혹」 보도소송

「로스의혹」 보도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항소심판결을 포함한 다수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이들 판결에서는 항소심판결에서의 역전을 포함하여 원고인 三浦和義 씨측이 패소한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배상액에서도 항소심에서의 감액화를 포함, 약간 저액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있다.

이러한 지난해의 판결 가운데서 특히 이곳에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의 첫번째는 지난해의 살인사건 유죄판결이 이러한 민사재판에 끼친 영향이라는 점이다. 이는 1988년 10월 22일의 석간에서 『大久保에 약속은 2백 만엔(1천 8백 만원 상당)』 등의 제목 아래 경시청의 수사본부는 三浦 씨가 大久保美邦 씨에게 처의 살해를 의뢰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취지의 마이니치신문의 기사가 문제화 된 사안으로 12월 12일 동경지방법원은 三浦 씨의 청구를 물리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가운데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해 지난해 3월 31일 동경지방법원에서 살인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유로 진실증명이 되었다고 하여 마이니치신문측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점은 앞으로 「로스의혹」 보도 재판의 승패나 배상액의 다과의 인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실성의 근거로서 이와 같은 미착정의 형사사건의 사법판단에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의거하는데 대한 시비에 관해서는 이론도 있을 것이며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 1985년 9월에 共同통신이 배신한 『三浦, 대마초를 자택에 숨기다. 전처가 목격 증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이 기사를 받은 3개 스포츠신문의 게재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신문사에 의한 통신사의 배신기사 의존과 기사의 오신상당성과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즉 기자클럽에의 미가입, 통신사 배신기사의 높은 신뢰성, 제공뉴스의 내용 왜곡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통신사와 가입신문사간의 약정 등을 이유로 신문사가 다시 배신기사의 입증취재를 함이 없이 배신 기사를 진실로 믿고 게재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신문사측의 주장에 대해, 4월 27일의 동경지방법원 판결은 「신뢰성이 높은 통신사로부터 기사의 배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사의 게재, 보도에 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안되며」 오신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문사측의 충분한 입증 취재가 요구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본건에서는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논리 그 자체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취재를 요구한다면 본 사안과 같이 취재능력에 제약이나 한계가 있는 스포츠신문등에는 가혹한 일이며 나아가 이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사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어놓을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통신사측에도, 배신을 받는 신문사나 방송국 등에도 취재와 보도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약간의 판결 가운데 공정한 논평의 법리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석간후지」의 『三浦에게서 보는 악인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붙인 1985년 9월 20일의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3월 18일의 동경지방법원 판결(피고 산케이신문사에 10만엔-90만원 상당-의 지불을 명함)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말하는 추리소설 137책』이라는 제목의 1988년 11월 19일자 아사히신문의 기사가 문제된 경우의

항소심 판단인 2월 8일의 동경고등법원판결(1심 판결 가운데 피고측에 20만엔-180만엔 상당-의 지불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측의 청구·부대항소 신청을 기각했다)이다. 전자에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견표명이 허용되는 요건으로서 ① 의견내용의 공공의 이해관련성 ② 의견형성의 전제사실의 진실성 또는 오신상당성과 함께 ③ 「전제사실로부터 당해 의견을 추론하는 일이 현저하게 부당, 불합리할 경우라든가 의견의 표현양태가 현저하게 상스럽거나 모욕적, 비방, 중상적이고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것을 내세워 전기 기사중의 「타고 난 범죄자」라는 의견은 ③에 해당되지 않으며 용서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후자에서는 의견표명의 특질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명예훼손과의 조정법리로서 의견 표명에 대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경우 ① ㉞ 의견형성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의견의 기초사실)이 기재되어 그 주요부분이 진실이든가 또는 그렇게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면책사실)일 경우 ④ 또는 기사공표 시점에서 의견의 기초사실이 미디어에 의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 혹은 이것과 면책사실과 함께 이루어질 때이며 ② 그리고 「당해 의견을 그 기초사실로부터 추론하는 일이 부당,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三浦 씨가 범죄소설을 자작 자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건 기사중의 기술은 전시의 요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후자의 동경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역설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의견의 진위·정당성은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일이며 헌법 21조에 비추어 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독자 등은 제시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진위의 판단이 가능하며 표명된 의견에 의해 독자의 판단 등이 즉각 형성될 수 없다는 것 등 의견표명의 자유보호의 필요성·중요성이라든가 미국법에서의 논평의 명예훼손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방향 등을 감안한다면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법리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 점 동경고등법원 판결의 ①의 ④의 요건의 사고방식은 그러한 방향에의 하나의 노력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정치인 보도와 명예훼손

끝으로, 지난해는 渡籣秀央 전 郵政相이 1989년의 신축지사 선거를 둘러싼 左川현금과 관련한 마이니치신문과 주간보석의 의혹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의 2개의 판결(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150만엔-1천 3백 50만원 상당의 지불을 명했다. ① 7월 27일 동경지방법원 판결, 후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② 2월 8일 동경지방법원 판결), 참의원 의원 猪木寛至 씨가 1991년의 동경지사 선거와 관련, 거액의 돈을 받고 선거출마를 포기했다고 도쿄스포츠 외 관련 3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집필한 평론가를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의 ③ 7월 21일 동경고등법원판결(사죄광고의 게재와 3백만엔-2천 7백만원 상당-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을 지지하고 猪木 씨측의 부대항소를 기각), 중의원 의원 三塚 博씨가 東北左川急便 사장의 의뢰를 받고 동사 운전기사의 교통사고 무마공작에 관여, 그 보답으로 경제적 편의를 받았다는 등의 동경스포츠 게재의 기사와 관련하여 신문사와 집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④ 2월 25일 동경지방법원 판결(피고 양자에게 2백만엔-

1 천 8 백만원 상당-의연대지불을 명했다.)등 정치인의 의혹보도에 대해 몇 개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우선 渡籣 郵政相의 2 개의 기사는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금전의혹 보도이며 함께 기사의 오신상당성이 다투어졌었는데 전자에서는 유력한 취재원으로부터의 취재사실이 미디어측으로부터 주장되었으나 취재원비닉의 요청 때문에 상세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아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데 반해 후자에서는 2 억엔(18 억원 상당)이 원고에게 전달된 혐의가 이미 여러번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실이 중시되어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근거 가 있었다고 판시되어 대조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다음에 유의해 두어야 할 것은 ①의 경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의 「취재원비닉과 진실성 혹은 오신상당성의 입증」이라는 미디어 쪽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동 판결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취재원의 비닉을 명예침해의 피해자의 불이익이 되도록 미디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닉 원칙이라든가 보도의 자유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보다 적절한 조정법리의 탐구도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②를 제외하고 모두 정치인측 승소, 미디어측 패소라는 사안의 결과에서도 상징되고 있는 것처럼 진실성이라든가 오신상당성을 둘러싸고 일반의 명예훼손소송과 같은 모양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 등을 받고 지사선거 출마를 사퇴했다는 등의 지적은 「당해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극히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③사건의 1992 년 6 월 15 일 1 심 동경지방법원 판결)라는 등의 표현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보다 엄격한 판단만을 보일 뿐이며 정치보도, 특히 정치인의 부패 등 의혹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민주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할 때 「현실적 악의」의 법리 채용까지는 금방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②의 접근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미디어의 입증책임을 완화와 면책의 확대에 의한 보다 넓은 보도의 자유 보장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